

제2620호
2018. 12. 1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8-136호 :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2
제2018-137호 :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3
제2018-138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4
제2018-14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	6

● 공 고

제2018-856호 :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	13
제2018-86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4
제2018-866호 :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 136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별장아파트	퇴계로12길 88	별장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등에관 한지침(국토부고시 제 2018-45호) 별표 31 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2018년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시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판정되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함	관리주체(소유자)는 1.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 2.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결과 제출 3.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 시행 시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	
정동아파트	정동길 13	정동아파트 관리사무소			
성요셉아파트	서소문로6길 3 4	성요셉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앙아파트	을지로27가길 2	중앙아파트 관리사무소			
장충아파트	동호로25길 3 6	장충아파트 관리사무소			
약수아파트	동호로 173	약수아파트 관리사무소			
회현제2시민아 파트 관리사무 소	퇴계로8길 101	회현제2 시민아파트 관리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 137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청계빌딩 (판매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90	청계빌딩 소유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등에관 한지침(국토부고시 제 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2018년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결과 C등급으로 평가되어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 필요	관리주체께서는 매년 2월 15 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 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 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 다. ※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등급
동남건물 (판매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6 길 19, 29	동남건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			
벨포스트 (판매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19	벨포스트 소유자 및 관리주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등에관 한지침(국토부고시 제 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2018년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결과 B등급으로 평가되어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 필요	관리주체께서는 매년 2월 15 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 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 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 다. ※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등급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1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구역(구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km)	면적 (㎡)	중 요 경과지	비고 (노선번호)
도로	구도	기정	황학 -14	황학동 811 ~ 황학동 1143	0.21	1167.8		732
		변경	황학 -14	황학동 811 ~ 황학동 1143	0.21	1133.8		732
도로	구도	기정	소공 -58	정동 8-5 ~ 정동 1-6	0.44	4770.2	덕수 초등학교	108
		변경	소공 -58	정동 8-5 ~ 정동 1-6	0.44	4456.2	덕수 초등학교	10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기결정된 도로구역을 일부 변경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수행코자 함.

3. 사업시행기간 : 기 완료한 도로로 별도 사업기간 없음.

4.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 익일로부터 14일간
- 장 소 : 중구청 도로시설과 (☎ 02-3396-6101~5)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붙임

6. 지적도면 : 공람장소에서 별도 확인

편입 토지세목조서

【 토 지 】항학-1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중구항학동	843-2	도	20	20	20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2	중구항학동	812-1	도	10	10	10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3	중구항학동	814-1	도	2	2	2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4	중구항학동	813-1	도	2	2	2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5	중구항학동	810-1	대	1	1	1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6	중구항학동	843-1	도	1	1	1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7	중구항학동	840-1	도	15	15	15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8	중구항학동	2474-1	도	987	229.6	229.6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9	중구항학동	831-1	도	20	20	20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10	중구항학동	824-1	도	12	12	12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11	중구항학동	823-1	도	20	20	20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12	중구항학동	938-1	도	15	15	15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13	중구항학동	2473-18	도	2591	809.9	775.9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14	중구항학동	945-1	대	32	10.3	10.3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 토 지 】소공-5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중구정동	6-1	도	3740.1	1524.6	1524.6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	중구정동	10-3	도	1.3	1.3	1.3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3	중구정동	5-9	도	943.1	317.1	317.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	중구정동	5-2	도	553.1	553.1	239.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중구정동	1-7	도	1786.5	1767.8	1767.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중구정동	1-61	도	996.7	606.3	606.3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140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

2. 금연구역 지정

□ 지정취지

-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 지정대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총 83개소

□ 지정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유치원·어린이집 총 83개소

- **유치원 ·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유치원 1개소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의 구역(절대보호구역)

※ 향후 신규시설의 인가 및 폐원 시 자동으로 지정 및 해제

□ 지정일자 : 2018년 12월 31일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 추후 보건복지부 계도기간 적용

3. 금연구역 해제

□ 해제취지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중복 지정된 금연구역을 정비하고자 함

- 해제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 해제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지정된 어린이집 [붙임2]
- 해제범위
 - 어린이집 건축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 해제일자 : 2018년 12월 31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위생과(☎3396-5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1] 금연구역 지정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유치원 현황

(2018.12월 현재)

연번	기관명	소재지	비고
1	가명유치원	청파로 447-1	
2	근화유치원	동호로20길 24	
3	서울광희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다산로 269	절대보호구역 신규 지정 병행
4	서울덕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덕수궁길 140	
5	리라유치원	소파로 2길 7	
6	수암유치원	다산로 32	
7	승의여자대학교부설유치원	소파로 2길 10	
8	신일유치원	동호로 10길 27	
9	약수유치원	동호로 10길 30	
10	영락유치원	수표로33	
11	일신유치원	퇴계로 6길 36	
12	서울장충유치원	청구로 17길 40	
13	서울충무초등학교병설유치원	퇴계로 50길 13	
14	한일유치원	퇴계로 88다길 5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집 현황

(2018.12월 현재)

연번	시설명	소재지	비고
1	CJ키즈빌	동호로 330 (쌍림동)	
2	GKL행복	남대문로5가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5층	
3	IBK 참!좋은	을지로2가 을지로 82	
4	LG서울역어린이집	남대문로5가 후암로 98 2층	
5	SKT행복날개	을지로2가 을지로 65 SK-T타워 3층	
6	SK네트웍스새싹	남대문로 90 SK네트웍스빌딩 3층 (을지로2가)	
7	SK브로드밴드행복한	남대문로5가 퇴계로 24 SK남산그린빌딩 4층	
8	가명	청파로 447-1 가명어린이집	
9	경동	장충단로 204 경동교회내 경동어린이집 (장충동1가)	
10	꿈나무	청계천로 400 롯데캐슬베네치아 101동 709호	
11	남산숲	동호로5길 193 남산숲어린이집 (신당동)	
12	남산타운	다산로 32 (신당동)	
13	농협중앙회	새문안로 16	
14	늘푸른	만리동2가 만리재로21길 9	
15	다산	동호로15길 50 (신당동)	
16	다솜	동호로10길 30 103동 101호(신당동, 약수하이츠)	
17	단우물	다산로48길 33 단우물어린이집(황학동)	
18	동화	청구로 64 청구e편한세상아파트 106동 1층	
19	동화나라	다산로38길 80 (신당동)	
20	롯데mom편한	회현동1가 소공로 35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210호, 211호	
21	롯데캐슬	청계천로 400 롯데캐슬베네치아 103동7층관리동	
22	리원	만리재로33길 21 (만리동1가, LG서울역리거) 102-102	
23	리틀포도나무	퇴계로90길 74 래미안하이베르아파트 관리동1층	
24	마주	중림로 10 112동 102호(중림동, 사이버빌리지)	
25	만리	만리재로 175 (만리동2가)	
26	무지개	청구로1길 23 113동 103호(신당동,신당삼성아파트)	
27	미담	퇴계로 447	

연번	시설명	소재지	비고
28	밤비니몬테소리	다산로 32 9동 106호(신당동, 남산타운)	
29	서소문삼성	을지로1가 을지로 19 2,3,5층 서소문삼성	
30	서울시청직장	서소문로11길 24 5-1번지 서울시청직장	
31	신당5동	퇴계로88가길 8-10	
32	신당동	청구로8길 41 (신당동)	
33	신당삼성	동호로15길 21-36	
34	신당중앙	다산로 165 (신당동)	
35	신일교회	다산로 128-9	
36	신한꿈나무	을지로2가 삼일대로 358 신한타워 3층	
37	아기사랑	다산로32길 25 (신당동)	
38	약수	다산로6길 15 (신당동)	
39	약수교회	다산로8길 32 (신당동)	
40	엄마품	청구로1길 23 108동 102호(신당동, 삼성아파트)	
41	엔젤	중림로 10 106동 103호(중림동, 사이버빌리지)	
42	영락교회	수표로 33 (저동2가)	
43	예금보험공사	청계천로 30 2층	
44	예람	다산로33길 47 (신당동)	
45	예지	청구로6길 32 (신당동)	
46	우리누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빌딩 2층 (저동1가)	
47	우리은행	회현동1가 소공로 51	
48	은지	다산로36가길 36 B동 101호(신당동, 일월빌라)	
49	을지	을지로27가길 24 (주교동)	
50	을지로푸르 하나금융	을지로2가 을지로 55 하나은행 2층	
51	이레	다산로20길 33 (신당동)	
52	제일병원직장	퇴계로 258-1	
53	중구청직장	마른내로12길 17-19	
54	중림	만리재로35길 12 (만리동1가)	
55	중앙	마장로14길 14 (황학동)	
56	청구	다산로24길 81 (신당동)	
57	충무	동호로27길 21 (목정동)	

연 번	시설명	소재지	비고
58	키즈슈	다산로 32 15동 101호(신당동, 남산타운)	
59	키즈월드	다산로 32 9동 102호(신당동, 남산타운)	
60	필동	퇴계로36가길 60 (필동2가)	
61	한국은행	남대문로2가 남대문로 55 한국은행 소공별관	
62	한솔	다산로 32 남산타운 단지내 한솔	
63	한일교회	퇴계로88다길 19 한일교회 교육관1층 (신당동)	
64	한화태평로	태평로2가 세종대로 92 4층	
65	해피맘	청계천로 400 롯데캐슬베네치아 105동 704호	
66	햇살	동호로14길 11-8 B동 102호(신당동, 뉴타운빌)	
67	현대	다산로36길 109 3동 101호(신당동,현대아파트)	
68	황학	난계로15길 23 (황학동)	
69	회현	퇴계로12가길 23 (회현동1가)	

[붙임2] 금연구역 해제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해제 대상 어린이집 명단

연번	시설명	소재지
1	회현어린이집	퇴계로12가길 23
2	필동어린이집	퇴계로36가길 60
3	충무어린이집	동호로27길 21
4	중구청직장어린이집	마른내로12길 17-19
5	을지어린이집	을지로27가길 24
6	신당동어린이집	청구로8길 41
7	다산어린이집	동호로15길 50
8	남산숲어린이집	동호로5길 193
9	약수어린이집	다산로6길 15
10	남산타운어린이집	다산로 32
11	청구어린이집	다산로24길 81
12	신당5동어린이집	퇴계로88가길 8-10
13	동화나라어린이집	다산로38길 80
14	동화어린이집	청구로 64 청구e편한세상아파트 106동 1층
15	황학어린이집	난계로15길 23
16	단우물어린이집	퇴계로 447 황학아크로타워상가동 2층 204호
17	만리어린이집	만리재로27길 36
18	중림어린이집	만리재로35길 12
19	영락교회어린이집	수표로 33
20	신당중앙어린이집	다산로 165
21	약수교회어린이집	다산로8길 32
22	가명어린이집	청파로 447-1
23	경동어린이집	장충단로 204
24	신일교회어린이집	다산로 128-9
25	꿈터어린이집	퇴계로88길 38
26	한일교회어린이집	퇴계로88다길 19
27	예랑어린이집	다산로33길 47
28	신당삼성어린이집	동호로15길 21-36
29	한솔어린이집	다산로 32 남산타운 관리동 1층
30	이레어린이집	다산로20길 33
31	슬기어린이집	퇴계로90길 56-8
32	리틀포도나무어린이집	퇴계로90길 74 래미안하이베르아파트 관리동 1층

33	예지어린이집	청구로6길 32
34	중앙어린이집	마장로14길 14
35	햇살어린이집	동호로14길 11-8 뉴타운빌 비-102
36	밤비니몬테소리어린이집	다산로 32 남산타운 9-106
37	키즈월드어린이집	다산로 32 남산타운 9-102
38	다솜어린이집	동호로10길 30 약수아파트 103-101
39	해피베베어린이집	청구로1길 23 삼성아파트 108-102
40	아기사랑어린이집	다산로32길 25
41	은지어린이집	다산로36가길 36 101호
42	롯데캐슬어린이집	청계천로 400 롯데캐슬베네치아 103동 7층 관리동
43	리원어린이집	만리재로33길 LIG서울역리가아파트 102동 102호
44	마주어린이집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112-102
45	엔젤어린이집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106-103
46	꿈나무어린이집	청계천로 400 롯데캐슬베네치아 101동 709호
47	해피맘어린이집	청계천로 400 롯데캐슬베네치아 105동 704호
48	무지개어린이집	청구로1길 23 신당삼성아파트 113동 103호
49	현대어린이집	다산로36길 109 현대아파트 3동 101호
50	키즈숲어린이집	다산로 32 남산타운아파트 15동 101호
51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서소문로11길 24
52	서소문삼성어린이집	세종대로 73
53	농협중앙회어린이집	새문안로 16
54	SK네트웍스새싹어린이집	남대문로90 3층
55	SK텔레콤푸르니어린이집	을지로 65
56	우리누리어린이집	삼일대로 340
57	한국은행어린이집	남대문로55
58	CJ키즈빌어린이집	동호로 330
59	삼성화재을지로어린이집	을지로 19
60	아모레퍼시픽서울어린이집	청계천로100 시그니처타워 서관 3층
61	예금보험공사어린이집	청계천로30 2층
62	SK브로드밴드행복한어린이집	남대문로5가 퇴계로 24 SK남산그린빌딩 4층
63	을지로푸르니하나금융어린이집	을지로 55 하나은행 2층
64	한화태평로어린이집	세종대로 92 4층
65	제일병원직장어린이집	퇴계로 258-1
66	GKL행복어린이집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5층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856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

「남창동 64-1~205-122간 도로개설공사」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중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아래 보상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남창동 64-1~205-122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 일대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수용재결기관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열람기간 : 2018.12.19. ~ 2019.1.2.
- 열람장소 : 중구청 가로환경과(본관 7층)
- 수용재결대상 : 열람장소비치
- 의견서 제출 : 편입되는 물건의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상기 열람기간 내에 중구청 가로환경과(본관7층)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청 가로환경과(02-3396-6024)로 문의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86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및「질서위반 행위 규제법」등, 상위법령에 부과 징수와 관련한 근거가 있어 규칙의 실효성이 없으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기관의 책무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 3396-4774, FAX : 3396-8652 nawo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폐지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866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위치, 이용자격, 이용제한에 대한 사항

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할 사업

-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 실태 파악
-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
-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
-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다. 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과 관련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예관동), 문의전화: 3396-5699, FAX: 3396-8688, 메일: kimbs071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의 근로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취약계층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비정규직근로자, 영세사업장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제5조(사업)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

- 3.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
- 4.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 6.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 자격)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퇴소 명령 등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사람에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